

제 5 장 이사, 이사회와 감사

<장명칭 변경 2000. 3. 17., 2020. 3. 31>

제29조 (이사)

① 이 회사의 이사의 수는 총 15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1999. 10. 1., 2002. 3. 29., 2003. 10. 21., 2005. 3. 25., 2006. 3. 24.>

② <삭제 2020. 5. 6.>

③ <삭제 2003. 10. 21.>

④ <삭제 2005. 3. 25.>

⑤ <삭제 2020. 5. 6.>

⑥ <삭제 2003. 10. 21.>

⑦ <삭제 2003. 10. 21.>

⑧ <삭제 2001. 3. 23.>

⑨ <삭제 2001. 3. 23.>

⑩ <삭제 2020. 5. 6.>

⑪ <삭제 1999. 10. 1.>

⑫ <삭제 1999. 10. 1.>

⑬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

된다. <개정 2009. 3. 13.>

⑭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
제29조의2 (이사의 자격)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,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<신설 2005. 3. 25.> <개정 2008. 3. 28.>

1. 이 회사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회사(이하 '경쟁회사'라 한다)를 지배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공정거래법)상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(단,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로 편입될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인 회사 및 그 계열회사는 경쟁회사로 보지 아니한다. 이하 같다) <개정 2008. 3. 28., 2020. 3. 31.>
2. 경쟁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<개정 2008. 3. 28.>
3. 경쟁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<개정 2008. 3. 28.>

② <삭제 2020. 3. 31.>

제30조 (이사의 결원)

①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10. 21.>

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.

1. 사망한 때
2. 파산이 선고된 때
3.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때 <개정 2023. 3. 30.>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

제31조 (이사의 직무)

- ① 이 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며,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회사를 대표하고,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. <개정 2001. 3. 23., 2003. 10. 21., 2006. 3. 24.>
- ②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1. 3. 23., 2003. 10. 21., 2006. 3. 24., 2020. 3. 31.>
-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20. 3. 31.>

제32조 (이사회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<삭제 1999. 10. 1.>
- ③ 이사회에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.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며,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1999. 10. 1., 2003. 10. 21.>

제33조 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의

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,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3. 10. 21., 2020. 5. 6.>

②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그 소집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03. 10. 21., 2006. 3. 24.>

제34조 (이사회 의결)

①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20. 3. 31.>

② <삭제 1999. 10. 1.>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35조 (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<삭제 2003. 10. 21.>
2. 연간사업계획,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20. 5. 6.>
5.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 5. 6.>
6. 장기차입금의 차입,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각 계획. <개정 2003. 10. 21., 2020. 5. 6.>
7.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<개정 2001. 3. 23., 2003. 10. 21., 2006. 3. 24.>
8.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9.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10. <삭제 2020. 5. 6.>
11. 이사의 경업허용
12. <삭제 1998. 8. 28.>
13. <삭제 2020. 5. 6.>
14.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<신설 2000. 3. 17.>
- 14의2.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
계획 <신설 2020. 6. 15.>
15. <삭제 2020. 5. 6.>
16. 상법 제393조 제1항을 포함하여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
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<신설 2020. 5. 6.>

제35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 <신설 2000. 3. 17.>

이사회는 회사의 규정에 의거 특화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36조 (이사회 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3. 17.>
- ②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<신설 2000. 3. 17.>
- ③ 회사는 제2항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<신설 2000. 3. 17.>

제37조 <삭제 2000. 3. 17.>

제37조의2 <삭제 2020. 3. 31.>

제37조의3 <삭제 2020. 3. 31.>

제37조의 4 (감사) <신설 2020. 3. 31.>

- ①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며,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30.>
-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. <조항번호 개정 2023. 3. 30.>
- ④ 감사 중 결원(제1항의 최저 원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)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. <조항번호 개정 2023. 3. 30.>

제38조 (감사의 직무) <조문명칭 변경 2000. 3. 17., 2020. 3. 31.>

-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20. 3. 31.>
- 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3. 17.>
- ③ <삭제 2000. 3. 17.>
-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

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3. 17., 2020. 3. 31.>

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을 요청한다. <신설 2019. 3. 27.>
<개정 2020. 3. 31.>

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

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

제39조 <삭제 2020. 3. 31.>

제40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<조문명칭 변경 2000. 3. 17., 2020. 3. 31.>

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03. 10. 21., 2020. 3. 31.>

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20. 3. 31.>